

#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426
----------	------

2017년 9월 6일  
행정자치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자 : 김광수(도봉) 의원 외 14명
- 나. 제안일 : 2016년 10월 17일
- 다. 회부일 : 2017년 10월 20일
- 라. 상정일 : 제27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16년 12월 6일 상정·심사보류  
제27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
2017년 8월 30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광수(도봉)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, 문자메시지, 소셜네트워크 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일명 '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')이 국회에 발의되는 등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호하고, 근로기준법을 우회하는 새로운 형태의 연장근로가

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들이 모색되고 있음.

- 이에 시장이 서울시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하며, 근무시간 이외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 공무원에게 ‘연결되지 않을 권리’를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

- 시장은 공무원이 휴식권을 보장받으며,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함(안 제16조의2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공무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입법예고(2016. 10. 26 ~ 2016. 11. 2) 결과 : 의견 없음.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동 개정조례안은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, 문자메시지, 소셜네트워크 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,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 제16조의2(사생활 보장)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.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6조의2(사생활 보장)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,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, 문자메시지,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최근 근로시간 외에 증가하는 휴대전화, 문자메시지,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휴식권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.
- 최근 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<sup>1)</sup>에 의하면 제조업·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녀 임금노동자 2천4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‘스마트기기 업무활용 현황 실태조사’ 결과,
  - 응답자 10명 중 7명꼴로 “업무시간 이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”고 응답했고, 이들은 업무시간 외 업무를 위해 일주일 평균 11시간 이상(677분)을 투여했다고 함.

※ 주요 처리업무(복수응답)는 △직장 메일 연동을 통한 메일 수·발신(63.2%) △업무 관련 파일 작성과 편집(57.6%) △메신저·SNS를 통한 업무처리와 지시(47.9%) △사내 시스템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와 지시(31.3%) △인터넷 원격 접근을 통한 업무처리(24.5%) △스마트기기를 통한 현장 모니터링(18.7%) 순으로 조사됐음.

1) 스마트기기 업무 시간의 업무활용의 노동법적 쟁점과 과제(2016), 김기선, 월간노동리뷰, 한국노동연구원

-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는 근로자들의 생활패턴 및 심리상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43%의 응답자가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함.<sup>2)</sup>
-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휴대전화, 문자메시지,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「근로기준법」 일부개정법률안(일명 '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')이 국회에 발의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(2016년11월21일)되어 있음.

※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일명 '퇴근 후 업무 카톡방지법')

발의일	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	주요내용
2016.6.22	2016.6.23	제6조의2(근로자의 사생활 보장)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(휴대전화를 포함한다), 문자메시지,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<b>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</b>

-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, 서울시 공무원들 또한 근무시간이외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인 노력을 통해 민간 부분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.
- 다만, 개정안은 시장의 선연적인 노력만을 명시함으로써 실효성있는 방안으로 부족함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전반적인 조직문화개선, 유노동 유임금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등 서울시 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2) 스마트 기기 탓에 초과근무 만연...일주일에 11시간 더(연합뉴스, 2016-06-22)

- 한편, 공무원의 경우 비상사태 등에 대한 비상근무 및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단서 규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.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대통령령)

**제2조(근무시간 등)**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,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,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. 다만, 소속 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,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(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이 정한다. <개정 2011.4.28.>

④ 「전자정부법」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
**제2조의2(비상근무의 종류)**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.

-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.
  - 가.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
  - 나.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·도발이 있는 경우
-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.
  - 가.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
  - 나. 천재지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
  - 다.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·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
-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.
  - 가.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
  - 나. 천재지변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 - 다.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·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
-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·재난,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

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.

**제2조의3(비상근무의 발령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조의2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. 이 경우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,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비상근무의 종류, 발령일시, 발령사유 등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,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, 2014.11.19.>

②~⑥

**제4조(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)**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.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.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(재석위원 6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##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6조의2(사생활 보장)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,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, 문자메시지,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〈신 설〉	제16조의2(사생활 보장) 시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,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, 문자메시지, 소셜네트워크 서비스(SNS)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